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9. 23.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8월 21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59회 임시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98. 9.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가. 폐지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개정전 에너지이용합리화법(1993. 3. 6. 법률 제4541호) 및 동법 시행령(1993. 8. 4. 대통령령 제13948호) 및 동법 시행규칙(1995. 8. 11. 상공자원부령 제16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과태료부과, 징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1995. 1. 5. 법률 제4891호) 및 동법 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9호) 및 동법 시행규칙(1995. 8. 11. 통상산업부령 제23호)의 개정으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에 의해 중복규정되었으므로 폐지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폐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할 당시 이 규정에 정하지

앞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같은법 및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각각 '95. 1. 5(법률 제4891호)와 '95. 7. 6(대통령령 제14719호) 및 '95. 8. 11(통상자원부령 제23호)의 개정된 내용중 법 제100조(과태료)와 동법 시행령 제42조(과태료 부과·징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추가로 개정되어 우리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치구의 조례 제정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며 특히,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자법 제15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5
----------	---

제출년월일 : 1998. 8. 19.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폐지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개정전 에너지이용합리화법(1993. 3. 6. 법률 제4541호) 및 동법 시행령(1993. 8. 4. 대통령령 제13948호) 및 동법 시행규칙(1995. 8. 11. 상공자원부령 제16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과태료 부과, 징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1995. 1. 5. 법률 제4891호) 및 동법 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9호) 및 동법 시행규칙(1995. 8. 11. 통상산업부령 제23호)의 개정으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에 의해 중복규정되었으므로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폐지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과태료]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과태료 부과·징수] 및 동법시행규칙 [부과기준] 제26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 중복.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협조사항 : 없음.

라. 조례안 : 별첨.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